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 적립한 금액은
- 답 : 97년도에 5,100만원, 98년도에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1,000만원임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1998. 11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